

「2025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사업화(1년차) 프로젝트 실행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도민이 겪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사업화(1년차)’ 프로젝트 실행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자료준비에 충분한 시간 확보 권고
-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집 제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으며 향후 본원 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 ④ 사업 신청 시, 모든 심사결과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고유권한임에 동의하며 심사과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⑤ 선정기업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기업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미준수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 www.gsic.or.kr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사업화(1년차) 프로젝트 실행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7월 말 예정) ~ 2025. 11. 14.(금) *예정
- (지원내용) 사회환경 문제해결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50백만원/공급가 기준)
 -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개발비 차등배정 예정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양호
지원금액(팀당)	5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 (지원대상 및 선정규모)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이 주관하는 사회환경 문제해결 협업모델(컨소시엄) 13개팀 내외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정의)에 따른 경기도 (본사)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등

○ (추진절차)

참여기업 온라인 접수 2025. 5. 16.(금)~6. 20.(금) 누리집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법 안내 2025. 5. 29.(목) 15시 (온라인 ZOOM)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안내 (*11페이지 참고)	요건검토 및 서면심사 서류심사 2025. 6. 23.(월) ~ 6. 27.(금) 결과발표 2025. 6. 27.(금)
사업화(1년차) 프로젝트 추진 협약체결일 ~ 11. 14.(금) -	선정기업 미팅·협약체결 기업별 미팅 2025. 7. 16.(수) ~ 7. 18.(금) 협약체결 2025. 7. 10.(목) ~ 7. 31.(금)	대면심사 대면심사 2025. 7. 2.(수) ~ 7. 3.(목) 결과발표 2025. 7. 9.(수)
중간워크숍(발대식) 2025. 8월 초 예정 컨소시엄 참여기업 전원참여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①중간보고서 9월 말 ②최종보고서 12월 중	성과공유회 2025. 12월 중 컨소시엄 참여기업 전원참여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5. 5. 16.)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소시엄

구분		세부기준
컨소시엄 구성요건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이 주관하고, 기타조직 1개소 이상이 함께 참여 ※ 하나의 조직(기업)이 참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컨소시엄에는 '라운드테이블(6/9, 6/10 개최예정)' 에 참석기업(기관)이 반드시 1개사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라운드테이블 참여 예정기업(의제제안기업) 한 눈에 확인하기: https://m.site.naver.com/1GGZG
세부 요건	주관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3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등
	협력 기업	주관기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타조직* *기타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대·중견)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학(산학협력단) 및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컨소시엄은 최소 2개 기업(기관)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5. 16.(금) ~ 6. 20.(금) 18:00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 문의 및 시스템 접속이 급증해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 초과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폐쇄되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gsic.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여 신청

※ 사업신청은 누리집 회원만 가능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 (지원분야) 아래 3가지 해결과제 중 1개 분야를 선택 지원

해결과제 분야	사업내용 예시
① 지역 활성화	지역 농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소멸 예방
②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독거 어르신 돌봄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 개발
③ 기후변화 대응	경기도 다회용 컵 순환모델 구축

3. 사업신청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연번	서류명	필수제출 여부	제출방법
1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필수제출	1~12번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하나의 파일 (PDF형식)으로 제출 ▼ '1.신청서식' 탭에 첨부
2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3	[서식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1부 *주관기업만 제출		
4	[서식4] 기업의 범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관기업만 제출		
5	[서식5]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부 *주관기업만 제출		
6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각 1부 *컨소시엄 참여기업 전부 제출		
7	사회적경제조직 인지정 서류 각1부 *컨소시엄 내 해당기업 전부 제출		
8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주관기업만 제출		
9	최근 2년간('23년~'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주관기업만 제출 *'24년 설립기업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추후 증명원 보완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주관기업만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주관기업만 제출, 해당 없을 시 제출 불요	해당 시 제출	
12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 1부 *주관기업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3년, '24년 발급분만 인정		
13	[별도양식] 신청기업 요약본 1부 *별도제공된 엑셀양식에 신청정보 요약작성	필수제출	별도 제공된 엑셀양식에 작성 후 제출 ▼ '2.신청요약본' 탭에 첨부
14	[자유양식] 사업계획 발표자료(PDF) 1부 *발표시간(6분 내외) 고려하여 작성	필수제출	'3.발표자료' 탭에 첨부
15	라운드테이블 참여확인서 (행사 종료 후 별도 발급예정)	추후제출	

○ (최종 선정 시 추가 제출서류)

- 최종 선정(협약) 이후 경기도가 고시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치에 따라 아래 법률에 대한 조회 및 범위반사실확인서 등을 발급 및 제출해야 하오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발급방법 별도안내 예정)

※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등

4. 신청 제외 대상

※(필독) 신청 제외대상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5년도 타 사업에 선정된 기업
(단, ①타 사업 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②교육·컨설팅 등 사업비 지원 이외의 간접 지원을 받는 경우, ③2025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및 2025년 임팩트 프랜차이즈 선정기업, ④2025년 판로마케팅 지원사업(생협매장 연계 판촉지원사업, 제품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생협매장 입점 지원사업, 소셜벤처 육성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지원제외 업종: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주점 등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
 - 음란성 및 사행성 도박 유도, 타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 당해연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결과 등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이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 최종 선정 후 위반사실 확인 시 보조금 반환·사업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등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보조금 전용계좌(우리은행 보조금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선정절차) 요건검토 → 서면심사 → 대면심사 → 최종선정

선정절차	세부내용
요건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지원기업(팀) 전체 - (심사방법) 지원자격 및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 등 기본사항에 대한 지원적격여부 검토
↓	
서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요건검토 결과 적격기업(팀) - (심사방법) 외부 심사위원(3인) 평가점수 합산,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기업의 1.5배수(20개팀) 선정예정
↓	
대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일정) 2025. 7. 2.(수) ~ 7. 3.(목) ※대면심사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일정보고 요청 - (심사대상) 서면심사 합격기업(팀) - (심사방법) 외부 심사위원(5인)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가점수 합산,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기업의 1배수 선정(*예비 20% 선정예정) - (발표방식) PPT를 활용 사업계획 발표 (발표 6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심사장소) 심사 대상기업 개별 안내 예정
↓	
선정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일정) 2025. 7. 9.(수) 결과발표 예정 - (발표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가점사항) 가점항목 별 중복적용은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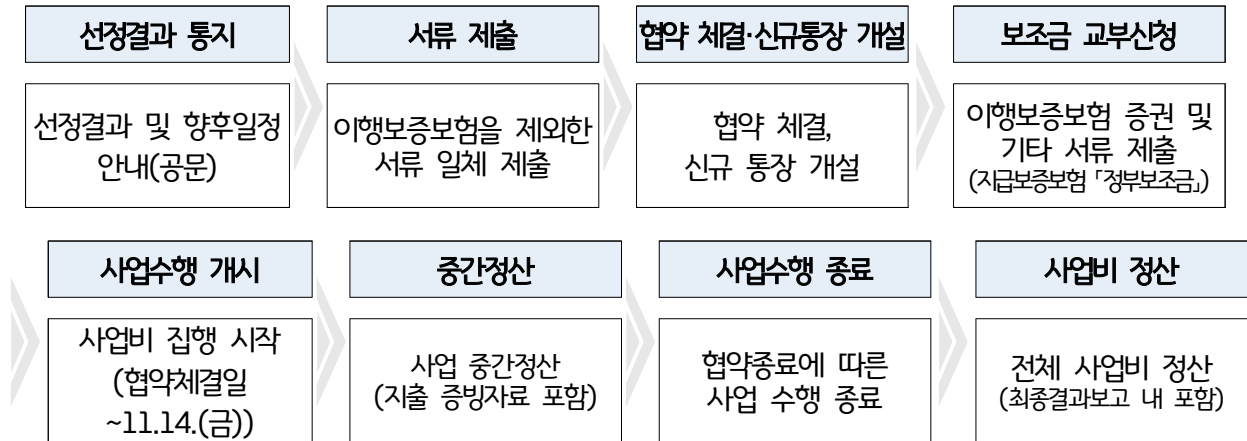
가점대상	가점	적용단계	제출서류
'23년, '2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가치지표 측정 탁월기업	3점	대면심사	SVI측정 확인서
'23년, '2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가치지표 측정 우수기업	2점	대면심사	
경기 임팩트유니콘 선정기업	3점	대면심사	제출서류 없음

- (심사항목) 참여 컨소시엄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예산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점수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가
1. 사회문제 해결기여도	20	컨소시엄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사업수행을 통해 도민이 겪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큰가?	20	17	14	11	8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5	사업목표와 계획이 적정하게 잘 수립되었는가? 지원을 통해 해당기간 내 핵심성과지표가 측정가능하고 달성 가능한가? 사업실행을 위한 역량(인력, 네트워크, 경험, 자원 등)을 갖추고 있는가? 지원 후에도 추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35	30	25	20	15
3.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25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의 전문성과 역할 배분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기업별 역할 수행을 통한 상승효과(시너지) 도출 가능성이 큰가?	25	21	17	13	9
4. 예산 타당성	20	효과적인 사업실행을 위해 예산은 타당하게 설계되었는가? 예산구성의 항목이 적합하며, 시장가격에 비해 적절한가?	20	17	14	11	8
5. 가점	3	가점사항(p.6) 해당 시 대면심사 점수에 가점부여(최대 3점)					
합계			100	85	70	55	40

□ 사업비 지급절차

○ (지급절차)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신청 시 유의사항)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보조금 지급 시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하며 보조금 신청 전 **필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 기존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 활용 가능 (사업비 신청 전 ‘잔액 0원 처리’)
- 법인수익금 계좌와 별도로 전용 보조금 계좌를 개설·관리하되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 이용하던 통장 사용 시 혼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는 수행기업의 지출결의 후 사경원의 승인에 따라 집행이 가능함
- (사업비 신청 서류) 공문, 교부신청서, 최종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 및 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

○ (정산관련 사항)

- 과업 미 수행 시 사업비 지급 불가
- 사업을 중간에 폐지한 경우에도 15일 이내 정산보고를 실시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제출 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최종 정산보고 검수가 완료되어야 사업이 종료됨

□ 사업비 지원불가 항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 자본재 임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수행 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그밖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사업예산 편성 규칙

- 사업예산계획 수립 시, 아래의 예산 분류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예산 분류 외 항목 책정 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 예산 항목 선택 문의는 이메일(유선 연락불가)을 통하여 사전 문의

○ (예산 분류)

비목	세목	내용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주관기관의 해당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전체 교부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가능
	사업수행 인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단기·임시 근로자에 지급하는 단순 인건비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액 적용(시급 12,152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강사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우편요금, 안전보험료 등 *강사비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임차비는 사업수행 기간 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등의 각종 단기성 임차비
	용역비	사업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분야(영상자료 제작, 연구개발 등)에 대해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재료비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 구입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외부인이 참여하는 교육·행사·회의시 식비 또는 간식비 *지출결의서 작성시 반드시 참석자 명단 및 사진첨부 *기준 : 식비 9,000원/1식, 간식비 4,000원/1인(식사시간 직전,직후 편성불가)
※ 강사비 및 자문비(컨설팅비)기준은 ‘강사비 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내부인력에게 지급불가) ※ 각종 수수료(이체 입금 수수료, 서류발급, 공과금 등)와 이해보험료 등은 지출불가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 상기 명시되지 않은 항목 외에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 논의 ※ 최종 선정기업 대상 회계처리기준 별도 교육·안내 예정		

○ (일반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 전담인력(행정 업무) 인건비의 **합계**는 ‘**전체 교부 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책정 및 집행 가능

○ (자문성 인건비) 컨설팅비, 강사비

- (강사비 지급 기준) 일반강의·교육(단일행사 또는 전문가 일회성 특강 등)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전·현직4급(서기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5급(사무관)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 1시간 이하의 경우 1시간으로 적용, 강사 여비는 대상과 관계없이 일비 2만원을 지급

- (컨설팅비 지급 기준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컨설팅을 위한 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대상
자문수당	교육, 훈련 및 연구관련 자문역할 수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당 10만원

□ 사업추진 시 보고사항

구분	시기	내용
사업계획	(최종사업계획)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 수정) 변경 시	추진일정, 예산사용 계획 등
월간보고	매월 10일	전월 사업 추진 현황 등
중간보고	9월 말(1회)	추진계획에 따른 진행사항 및 성과, 예산 사용 등
최종보고	11월 말	정산자료, 성과 등
그 외 각종 지출 문서	사업비 집행	

※ 이 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요청하는 사업점검에 필요한 기타 사항

□ 사업계획서(신청서) 작성법 안내

○ 추진일정 : 2025. 5. 29.(목) 15:00~16:00

○ 추진방법 : 온라인 회의(ZOOM)

- 접속링크 : <https://m.site.naver.com/1I8Ia>

※ 위 접속링크 오류 시, 아래의 회의 ID와 암호를 직접 입력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 ID	860 9608 4855
회의 암호	2025

○ 안내내용 : 사업화(1년차)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방법,
유의사항 안내, 질의응답 등

□ 문의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이상급 대리

- ☎031-258-3284, 3248 / sglee@gsic.or.kr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후 유의사항

- ① 선정기업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미준수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② 선정 후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아래와 같은 조치 예정
 - 보조금 반환·사업 선정 취소(사업부서/수탁기관)
 - 3년 이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 적용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 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체결한 협약서·보조금 관리 기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계획한 사업목표 달성을 및 보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
- ⑤ 「2025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의 발대식, 성과공유회, 보고자료 제출 등에 빠짐없이 성실히 임해야 함
- ⑥ 기업의 단순 변심 혹은 귀책 사유로 사업 중도포기·중단 및 환수사례 발생 시, 향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⑧ 지원사업 참여 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추진은 가능하나, 약정체결일 전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 사후보전 방식 불가
- 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⑩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 타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당해연도 중복참여 불가
- ⑪ 사업부진,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비 횡령 등 부정행위 발생, 기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붙임 1. 2025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사업화(1년차) 신청서식 1부.
2. 2025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사업화(1년차) 신청기업 요약본 1부.
3.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성과 측정 가이드북 1부. 끝.